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25

제출연월일 : 2002년 월 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제안이유

- 장사동해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납골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주요골자

- 도지사는 장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묘지등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3조)
- 장사시설중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지정 및 봉괴·침수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묘지등의 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함(제4조·제5조)
- 보존묘지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문화계 등에 조예가 깊은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제7조)
-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도보존묘지 또는 도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평장”이라 함은 시체 및 유골을 지하에 매장한 후 봉분을 만들지 아니하고 상석·비석등도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게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묘지등의 수급계획) ①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화장·납골의 확산과 장사문화 개선지원
2.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 유도

②시장·군수는 도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중·장기 묘지등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납골시설의 설치장소) 납골묘·납골탑 및 납골당 등 납골시설(공설 납골당 및 종교단체·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관할 시장·군수가 지역 여건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

제5조(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 붕괴·침수등 재해가 발생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등 묘지등의 설치제한 지역은 시·군조례로 정한다.

제6조(묘지등의 사전매매 등)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매매등을 허용하는 요건은 시·군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 ①충청북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고 문화재등에 조예가 깊은 자, 관련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도지사는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묘지등에 관하여는 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보존묘지 또는 도보존분묘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수 주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제9조(도비의 보조) 도지사는 도내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시·군에 보조할 수 있으며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공설 화장장 또는 공설납골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2. 공설·공동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
3. 시·군 시범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인접 시·군간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관리
5.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의 전개 등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葬事등에 관한法律

第5條(墓地등의 需給計劃 수립) ①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와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區域안의 墓地·火葬場 및 納骨施設의 需給에 관한 中·長期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 地域 特性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劃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 장사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시·도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묘지등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출생자 및 사망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매장자수· 화장자수 및 납골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3.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존의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 및 그에 따른 제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일제조사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도묘지등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시·군·구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시·도 및 시·군·구묘지등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의2(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공설묘지등의 설치기준(제7조의2관련)

1. ~ 2. (생략)

3. 공설납골시설

가. 공설납골묘

(가) 납골묘지 면적중 녹지공간을 100분의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관리사무실, 유족 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납골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라) 납골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설납골담

공설납골담에 관한 기준은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공설납골당

(가) 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납골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1조관련)

1. 개인묘지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 다 (생략)

라.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가족묘지

가. ~ 마 (생략)

바.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종중·문중묘지

가. ~ 마 (생략)

바.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생략)

4. 법인묘지

가. 법인묘지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 바 (생략)

사.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설화장장 등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와 같다.

[별표 3]

시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 설치기준(제13조관련)

1. (생략)

2. 사설납골시설

가. 납골묘

(1) 개인 또는 가족납골묘

(가) 납골묘 설치자가 개인 또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개인의 경우 10제곱미터, 가족납골묘의 경우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납골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종중 또는 문중납골묘

(가) 종중 또는 문중이 그 종중 또는 문중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의 납골묘지 면적의 범위안에서 재실 또는 사당을 설치할 수 있다.

(다) (가)의 납골묘지 면적중 납골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라)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 (마) 납골묘는 사원·묘지· 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바)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사)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3)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납골묘

-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하고자 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의 시설은 납골묘지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나) 납골묘지 빈적중 녹지공간을 100분의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 관리사무실, 유족 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 (라)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 (마) 납골묘는 사원·묘지· 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바)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사)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4)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묘

- (가) 납골묘지 면적중 녹지공간을 100분의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나) 관리사무실, 유족 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동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 (라) 납골묘는 사원·묘지· 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마)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바)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나. 납골탑

납골탑의 설치기준은 가목의 납골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납골당

(1) “가족 또는 종종·분중 납골당”

- (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종·분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한다.
- (나) 납골당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다) 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라) 납골당은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납골당

- (가) 납골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사원경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계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당

- (가) 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나) 납골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사원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①법 제1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15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한다.
2.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공설묘지·법인묘지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점도구역
4.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7.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8.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제16조(묘지의 사전매매 등)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장기동이식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4. 합장을 하는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한다)

5.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

제1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시·도에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및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소유자등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시·도보존묘지등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參考事項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분묘"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